

##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특약

#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함)거래는 기준(시장)지수에 의해 금리지급조건이 결정되는 정기예금으로 주가지수정기연계정기예금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약관을 적용한다.

### 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거치식 정기예금이다.

### 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다.

### 제4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신규가입일로부터 모집마감일까지의 기간과 모집마감일다음날(기준지수결정일)부터 예금만기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전 기간을 말한다.

### 제5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상품유형별로 1인 1계좌 가입가능하다.

## 제6조 【용어의 정의】

- ① 기준(시장)지수 : KOSPI200지수 및 개별주가등 주가지수와 국제 금가격, 환율, 채권금리 등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파생거래가 가능한 모집일에 확정된 지수를 의미하며, 기준지수 수준 및 지급이자 결정방법은 모집일에 정한다.
- ② 모집일 및 모집기간 : 모집일은 이 예금의 판매를 위한 판매개시일을 말하며, 모집기간은 판매마감일을 말한다.
- ③ 모집기간 : 모집일로부터 모집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- ④ 모집기간이자 : 모집당시 은행에서 정한 이율로서 모집기간중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 적용되어 계산되는 이자를 말한다
- ⑤ 지급이자 : 계약기간동안 적용하는 이자를 말하며, 지급이자의 구체적 결정구조는 고객확인서에 표시된다.
- ⑥ 지수결정일 : 이자지급을 위해 모집일에 확정된 기준지수의 가격을 결정하는 날을 말한다.
- ⑦ 조기상환 : 가입시점에 고객과 은행이 합의한 특정조건이 충족되어, 예금의 만기일이전에 이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
## 제7조 【상품유형 및 이자지급방식】

- ① 이 예금에는 만기상환형과 조기상환형이 있으며, 각 예금에 따라 상환방법은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② 만기상환형은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③ 조기상환형은 특정시점에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이라도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
## 제8조 【이자계산】

- ① 이 예금의 이율은 모집기간 중 이자와 시장지수의 변동에 따른 약정이자로 구분하여 계산한다.
- ② 모집기간 중 이자는 예금의 신규가입시 은행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.
- ③ 약정이자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장지수는 신규가입시 은행이 정하여 고지한 지수로 한다.
- ④ 만기상환형의 약정이자 계산은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⑤ 조기상환형의 약정이자계산 및 조기상환방법은 신규가입시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- ⑥ 약정이율 조건표는 기준지수결정일 다음 영업일 이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신규가입시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.
- ⑦ 이 예금의 만기 후 이율은 고객확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## 제9조 【중도해지】

① 이 예금은 모집기간 경과 후에는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입자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우체국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신규가입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수수료율에 의해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가입원금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.

## 제10조 【분할해지】

이 예금은 분할해지하여 인출 할 수 없다.

## 제11조 【기 타】

이 예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규가입시 고객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특약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